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사업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목적 사업 추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47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u>근로자</u> 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 하. (생략)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청년·근로자</u> ----- ----- ----- 마. ~ 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임.¹⁾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으로는 학문 등의 증진 목적으로 사업, 장애인·노인 등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거되고 있음.²⁾

□ 개정안은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함으로써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하여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³⁾ 간편하고 시간·비용이 절약되며, 공익신탁의 운영·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함.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남은 재산이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사익신탁⁵⁾과 달리 공익신탁은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공익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⁶⁾
 본래의 취지에 따라 잔여재산이 유사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

○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 지원⁷⁾을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6)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받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1조(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